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2. 12. 9.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	구청장
	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"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"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O 제출자: 구청장

O 제안일: 2022. 11. 15.

O 회부일: 2022. 11. 18. (의안번호: 22 - 134)

2. 제안이유

O 2022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O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변경(안 제7조)
 - 2022년 12월 31일 → 2027년 12월 31일
- O 위원회 구성 시, 성별 비율을 고려하는 내용 추가(안 제10조)
 -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→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
- O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수시개정을 줄이기 위해 내용 수정 (안 제10조)
 - 행정지원국장, 남북 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→ 남북교류업무를
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

O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와 유사한 조항 삭제(안 제17조, 안 제18조)

4. 관계법령

O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2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O 주요내용으로 (안 제7조)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변경
 - 2022년 12월 31일 → 2027년 12월 31일
- (안 제10조)에 위원회 구성 시, 성별 비율을 고려하는 내용 추가
 -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→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
- O (안 제10조)에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수시개정을 줄이기 위해 내용 수정
 - 행정지원국장, 남북 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→ 남북교류업무
 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
- (안 제17조, 안 제18조)에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유사한 조항 삭제

O 검토의견으로는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고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과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,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통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당장은 외부환경적 이유로 경색되어 활용처가 미비 할 수 있으나 마포구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기금이 되도록 기금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<u>조례</u>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、운용되는 기금과 <u>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</u>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、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·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、유동성、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